##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지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30

발의연월일: 2024. 7. 25.

발 의 자: 박지혜・이기헌・박수현

이개호 • 이수진 • 위성곤

정일영 · 허성무 · 김 윤

채현일 · 황명선 · 이소영

정진욱 · 최민희 · 김영환

문금주 • 민홍철 • 허 영

이재관 • 박희승 • 문대림

김성환 · 박홍배 의원

(239]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편차가 커서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서도 보상금 등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보상금 등 지급의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평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같 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는 동일한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 는 한편,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 지급 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를 위해 헌신한 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고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(안 제19조제1항, 제19조의2 신설). 법률 제 호

##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보훈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후단 중 "한다"를 "하고,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이행을 권고하여 야 한다.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국고 보조)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예우 및 지원) ① 국가는	제19조(예우 및 지원) ①
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	
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	
등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지급의	i
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	
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	
여야 <u>한다</u> .	하고, 각 지방자치단체
	간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
	대상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에
	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
	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이
	행을 권고하여야 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제19조의2(국고 보조) 국가는 예
	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
	대하여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
	른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
	을 보조할 수 있다.